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73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임오경 · 김 윤 · 윤준병
이기현 · 민형배 · 김원이
조계원 · 박수현 · 차지호
양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법 제8조에서는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치유관광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치유관광사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관광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범죄경력 조사의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920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9조제1항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0920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p> <p><u><신 설></u></p>	<p>법률 제20920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p> <p><u>제8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u> <u>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3.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u>4. 이 법 또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u>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9조(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 취소 등)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p><u><신 설></u></p>	<p><u>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u></p>
<p><u><신 설></u></p>	<p><u>2.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u>제22조의2(관계 기관 등의 협조)</u> <u>등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u></p>